

영농조합법인 설립

어떻게 하나?

-홍보부-

I. 영농조합법인 이란?

가. 협업영농을 통하여 영농의 능률화와 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

○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과 동법 시행령의 제정으로 희망하는 농민은 자유롭게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됨.

○ 영농조합법인은 영농규모가 작은 농민끼리 농지, 가축, 농기계등 영농자산을 공동출자하여 법인이 농지를 소유하면서 협업적 전문영농을 하는 새로운 제도임.

○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농작업을 협력하고 서로 분담할 수 있으며, 경영규모도 커져 영농기계화가 쉽게 이루어짐은 물론 전문적인 영농으로 절감된 인력은 농외취업으로 소득을 높일 수 있음.

나. 자격을 가진 농민 5인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관할등기소에 설립등기함으로써 설립

○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자격은

- ① 당해시군에서 3년이상 영농에 종사하고,
- ② 조합법인 사무소 소재지나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면서,

③ 1ha(3,025평)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거나 축산의 경우 소 30두, 족소 20두, 돼지 200두, 닭 1만수등 일정규모 이하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민으로 1가구 1인에 한함.

○ 조합원 자격을 가진 농민 5인 이상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(정관의 작성은 농림수산부에서 고시한 영농조합법인 정관례를 기준으로 참고하면 간편함.)

○ 정관작성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함으로써 설립.

다. 전문적인 영농은 물론 공동이용시설의 설치·운영, 농작업의 대행, 농기계 및 시설의 대여등 다양한 사업 영위

○ 영농조합법인은 논농사, 과수, 원예, 시설농업, 축산 등의 영농활동은 물론 가공·판매 등의 부대사업과

○ 농산물보관창고, 건조장등 지역농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·운영 및 농작업의 대행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다양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.

라. 농지, 농기계등 현물과 현금으로 출자

○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농지, 농기계, 가축, 현금

등으로 출자할 수 있으나,

○ 농지를 출자한 조합원에 한하여 현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제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만이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,

○ 영농조합법인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영농조합법인 총출자액의 1/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음.

마. 일반법인과 달리 농업경영에 있어 여러 가지 지원 실시

※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들이 개별농민으로 영농할 때 와 마찬가지로 각종 세제상 혜택 부여.

〈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세제상 지원〉

○ 법인세 감면 :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얻는 농지소득전액과 농지소득이외의 소득중 일정금액(소득세법 농가부입소득 면제금액 500만원×조합원수).

○ 부가가치세 면제 : 농작업대행용역은 면제, 영농조합법인이 구입하는 농약, 비료, 농기계등 농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 적용(조감법).

○ 지방세 감면 : 조합법인이 고유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, 등록세, 재산세 면제(지방세법).

- 농지세를 조합법인에 부과할 경우 면적이 커 누진과 세되는 불이익방지를 위해 조합원별로 부과.

- 조합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며 최저세율인 0.1% 적용.

〈조합원에 대한 세제상 지원〉

○ 양도소득세 면제 : 조합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면제.

○ 소득세 감면 : 조합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중 농지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농지 이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중 일정금액을 면제하고 그외

배당소득은 5% 분리과세.

○ 상속세 면제 : 출자자분중 농지 9천평, 초지 4만 5천평, 산림지 9만평까지는 과세가액에서 공제(일반농민과 동일).

※ 영농조합법인은 법인격을 가진 농민이므로 일반농민과 같이 영농자금, 농지구입자금, 농기계 구입자금 등의 금융지원을 실시하며 개별사업의 지원성격에 따라 지원 규모를 일반농민보다 확대.

· 영농자금 : 농가당 영농자금 지원한도금액에 조합원수를 곱한 금액을 일시에 지원.

· 농지구입자금 : 일반농가 지원규모의 2배까지 지원.

· 농기계구입자금 : 기계화 영농단으로 선정 지원.

※ 시군, 농촌지도소, 농(축)협, 농어촌진흥공사등 관계 기관에서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및 경영, 농업기술, 사업활동을 지원.

· 농(축산)업협동조합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음(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용자 2억원까지).

II. 영농조합법인 설립절차

1. 설립의 준비

○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서 법인설립에 따른 별도의 인가나 허가가 필요없음(자율설립)→법적 설립요건을 갖추어 설립등기함으로써 설립.

○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자격을 갖춘 농민 5인이상(발기인)이 조합법인 설립을 발기하고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여야 함.

○ 영농조합법인 설립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농민이어야 하며 1가구 1인에 한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음.

〈영농조합법인 조합원 자격 : 법 제6조, 영 제6조〉

① 당해시군에서 3년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소규

모 경영 농민.

②조합법인의 사무소 소재지나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면서 1㏊(3,025평)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자 또는 다음 규모 이하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.

※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가축사육 규모 (영 별표)

가 축	규 모	비 고
소·말	30두	마리수의 계산은 성
젖소·사슴	20두	축을 기준으로 한
돼지	200두	다. 다만, 육성우의
면양·산양	300두	경우에는 2두를 1두
토끼·친치라·밍크·여우	5천두	로 본다.
닭·오리·매추리	1만수	
꿀벌	150군	

○조합원자격의 상실 : 조합법인의 사무소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외의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

2. 정관의 작성

○정관이란 영농조합법인의 조직, 사업, 관리, 운영등 영농조합법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자치규범으로서 조합법인 설립시 정관을 발기인 5인이상이 공동으로 작성

※ “5인이상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(법 제6조 제5항)” 한다는 것은 전원의 합의를 의미하는 것임. 따라서 1인이라도 반대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의를 할 필요가 있음.

○정관은 조합법인의 운영에 있어 기준이 되므로 개별조합법인의 사업, 규모, 운영방식에 따라 적절히 규정되어 다음의 사항(절대적 기재사항)은 반드시 정관으로 정하여야 함(영 제13조).

①명칭(조합법인은 그 명칭중에 반드시 영농조합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영농조합법인이 아닌자는 동명칭을 사용하지 못함 : 법제6③)

- ②목적
- ③사업

④사무소의 소재지

⑤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

⑥조합원의 가입·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

⑦조합원의 가입·탈퇴 및 제명시의 지분에 관한 사항

⑧출자액의 납입방법, 출자액의 산정방법 및 조합원

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액에 관한 사항

⑨이익금의 처리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

⑩적립금의 비율과 그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

⑪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

⑫총회 기타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·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
⑬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

○상기이외의 사항(임의적 기재사항)은 필요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의 설정에 맞게 임의로 정할 수 있음.

〈영농조합법인 정관례〉

· 정부에서 농민의 정관작성을 돋고, 정관작성의 기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부 고시90-40호 ('90.10.17)로 영농조합법인 정관례를 정하여 고시하고 있음.

· 정관작성시 정관례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

3.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

○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은 「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(법 제6조 ⑤)」를 하여야 함.

- 조합원의 모집 : 정관과 설립취지에 찬성하고 영농조합법인에의 가입을 원하는 조합원자격이 있는 농민을 대상으로 하여 조합원 모집(1가구당 1인)

- 조합원 명부의 작성 : 설립당시 조합원의 명부작성

- 출자1좌당 금액과 총출자 좌수의 결정

- 설립 당해년도의 사업계획 수립

- 설립에 필요한 자산의 취득등

4. 창립총회

○정관, 「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」는 창립총회의 의

결을 거쳐 최종 확정

- 창립총회의 구성 : 발기인 및 창립당시의 조합원
- 창립총회의 의결할 사항
- ① 정관의 승인
- ② 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신임(이사회 구성)
(임원(이사)은 조합원중에서 선임한다)
- ③ 출자납입에 관한 사항
- ④ 설립당해년도 사업계획의 승인등
- 창립총회의 의결은 영동조합법인 설립의 기본이 되는 중요사항이므로 회의경과를 명확히 하기위하여 「창립총회 의사록」을 반드시 작성하고 참석자들이 기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함.

○ 설립등기에도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『창립총회 의사록』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음(공증인법 제66조의 2).

5. 출자

- 영농조합법인에의 출자는 농지, 농기계, 가축 및 기타 현물에 한하여 출자할 수 있으며,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은 총출자액의 1/3을 초과할 수 없음.
- 현금출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, 영농조합법인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를 출자한 조합원에 한하여 현금으로 출자할 수 있음(영 제11조).
- 출자의 불입 :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하고 농지와 같은 등기,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이나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함.
- 출자증서의 발행 : 출자를 불입한 조합원에게 대표이사 명의로 출자증서를 발급하고 출자증서에도 출자자수, 출자액, 출자재산의 표시(토지의 경우 지번, 지목, 면적을 말함)등을 기재.

※ 출자증서는 조합원의 지분상속시 상속공제의 근거가 되므로(상속세법 제8조의3②) 출자내역 등을 명확히 하여 발행하여야 한다.

상속공제의 범위 : 농지 9,000평, 초지 4만 5천평, 산림 9만평.

○ 출자와 관련하여 현물출자의 경우 출자액 산정방법, 조합원 1인의 출자최고한도, 출자액의 납입방법 등을 정관으로 반드시 정하여야 함.

※ 농지출자에 따른 『농지상실』문제로 영농조합법인 가입을 주저하는 조합원이 있을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 실정에 따라 출자농지는 출자한 조합원의 동의없이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, 조합원이 탈퇴할 경우 출자한 농지로 지분을 환불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정할 수 있음.

6. 설립등기

가. 등기신청인 :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(대표이사)

나. 등기신청서 : 특별히 정해진 서식은 없으나 다행의 등기사항은 등기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별지 2를 참조하여 법무사와 상의하여 작성

다. 등기사항 및 등기신청서 첨부서류(영 제7조)

○ 등기사항

- ① 명칭 ② 목적 ③ 사업 ④ 사무소의 소재지
- ⑤ 출자액의 납입방법, 출자액의 산정방법 및 조합원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
- ⑥ 해산사유를 정한때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
- ⑦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의 성명
- ⑧ 수인의 조합원이 공동으로 조합법인을 대표(공동대표)할 것을 정한때에는 그 규정

○ 등기신청시 첨부서류

- ① 창립총회 의사록(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)
- ② 정관
- ③ 출자자산의 내역을 기재한 서류
- ④ 조합법인의 대표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(주민등록등본)

라. 관할등기소 : 영농조합법인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, 지방법원의 지원 또는 등기소

7. 설립통지

○ 영농조합법인은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

에 관할시장, 군수(또는 구청장)에게 설립사실을 통지하여야 함.

※ 설립통지시 첨부서류 : 정관, 조합원명부, 출자자
산내역

○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사실을 통지받은 시장·군수는 그 내용을 기재한 영농조합법인 현황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농협군지부 또는 축협과 시·군 농촌지도소에서 설립사실을 통지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육성·지도할 수 있도록 조치.

8. 농협의 준조합원 가입

○ 영농조합법인은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협의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음.

○ 준조합원으로 가입한 영농조합법인은 농협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됨.

영농조합법인의 설립절차에 관하여 보다 자세히 알고 싶은 사항은?

○ 해당지역의 시·군, 농촌지도소등 행정기관이나 농협에 문의하시거나

○ 아래의 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농림수산부 농업구조정책과

(경기도 과천시 중앙동, 전화 (02)503-7241)

- 농협중앙회 영농지도과

* (서울 중구 총정로1가 75, 전화 (02)735-7481)

• 변비가 심할 때

돼지 쓸개(膽) 1개를 씻어서 즙을 짜내고 껌질은 버린다. 이 쓸개즙에 차숟가락으로 식초 한술을 넣어 간다. 이것을 관장기(灌腸器)로 항문에 깊이 넣으면 된다. 돼지쓸개가 말랐을 때에는 물 한 컵을 부어 불린 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만들면 된다. 이렇게 2~3회 하면 대변은 곧 통하게 된다.

• 당뇨병이 심할 때

수퇘지 쓸개(膽) 5개와 천화분(天花粉) 1돈쯤 (3.75g)에 물 1되 정도를 부어 은근한 불로 조린다. 물기가 없어지고 말랐을 때 꺼내서 다시 말려 가루를 만든다. 이것을 꿀과 개어 녹두알 크기만 한 환약을 만들고 매일 세 차례 식후마다 다섯알을 입에 물고 양치질을 하며 삼키면 된다. 이렇게 계속하면 매우 효력이 있다.